



학회용

예체능 분야 학회 출판 윤리 길잡이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학회용

예체능 분야 학회
출판 윤리
길잡이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01 서론

- 1. 발간 목적 06
- 2. 체육·예술 분야 출판윤리의 특징 07
- 3. 학술 논문 출판의 흐름도 08
- 4. 이 책의 구성 09

02 출판윤리 관련 주요 이슈

- 1. 출판윤리 규정의 중요성 12
- 2. 출판윤리 관련 주요 주체의 역할 및 의무 14
- 3. 출판윤리 검증과 조치의 명확성 강화 20
- 4. 출판윤리 관계 기관과의 협력 22
- 5. 출판윤리 부정행위 예방 노력 23

03 학술논문 출판 단계별 권고 사항

- 1. 투고 전(前) 단계 26
- 2. 투고 단계 28
- 3. 심사 단계 29
- 4. 출판 단계 31
- 5. 출판 후 단계 32

04 출판윤리 사례별 권고 사항

- 1. 저자됨의 변경 관련 대응 권고 34
- 2. 표절 관련 대응 권고 36
- 3. 중복 게재 관련 대응 권고 39
- 4. 자료 번조 관련 대응 권고 41
- 5. 이해상충 관련 대응 권고 43
- 6.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 관련 대응 권고 45
- 7. 출판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제보자 관련 대응 권고 48
- 8. 심사자의 부정행위 관련 대응 권고 50

05 출판윤리 규정 작성 권고 사항

- 1. 출판윤리 규정 작성 지침 54
- 2. 『○○학회의 출판윤리 규정』 예시 55

부록

62

01

서론

-
1. 발간 목적
 2. 체육·예술 분야 출판윤리의 특징
 3. 학술 논문 출판의 흐름도
 4. 이 책의 구성

1

발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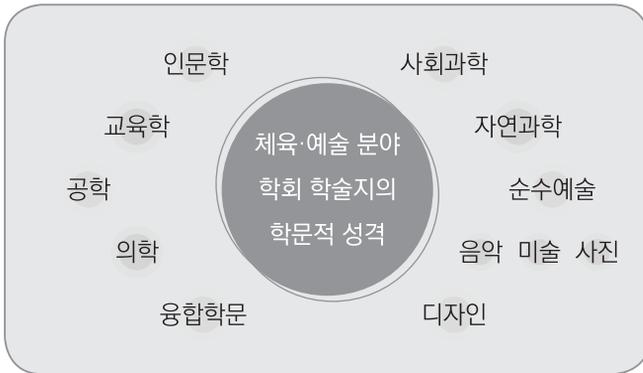
- 01 연구 결과의 공적 발표와 학술 논문으로서의 최종 승인을 담당하는 각 학회의 출판 윤리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원활한 해결 방안 지원
- 02 연구 수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연구부정행위와 구별하여 연구 결과의 공적 출판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예술 분야 학회의 윤리적 학술 출판의 질적 향상 도모

이 책은 국내의 출판윤리 규정의 문헌 조사와 체육·예술 분야 학회 규정에 대한 내용분석과 실태 조사, 학회 편집인, 심사자들의 전문가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집필되었음.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본 과제의 최종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2

체육·예술 분야 출판윤리의 특징

01 체육·예술 분야에 속한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학문적 성격은 과학 기술 분야, 의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와 비교하면 범위가 넓고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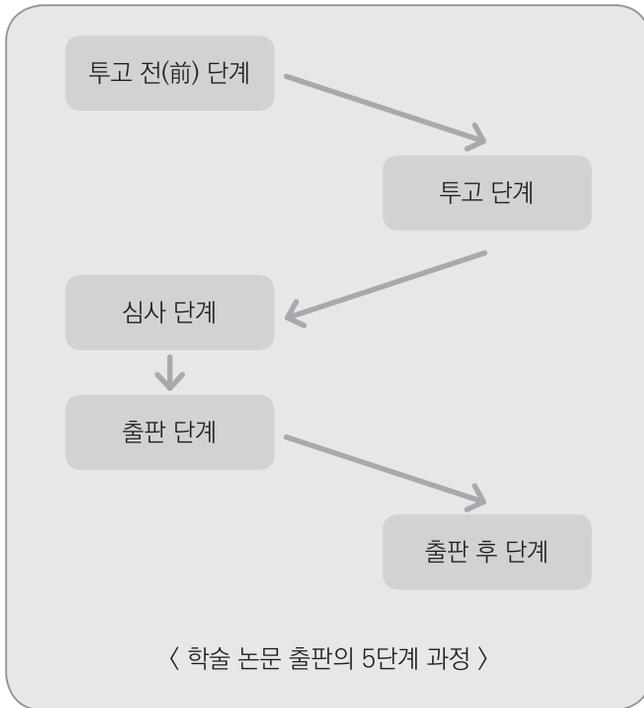
02 이에 따라 각 학회의 출판윤리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이나 의학 분야의 출판윤리 규정을 준용하는 학회도 있음. 이는 출판윤리 관련 규정의 내용이 체육·예술 분야의 각 학회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예시]

운동생리학 분야의 학회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성격의 연구가 많음. 한국운동생리학회의 출판윤리 규정에는 체육·예술 분야의 타 학회와는 다르게 동물 연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 학술 논문 출판의 흐름도

01 한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여 학술 논문으로 최종 출판을 되기까지의 과정은 시계열적으로 전개되며, 이 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02 〈학술 논문 출판의 5단계 과정〉에서 출판윤리 문제는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편집인, 저자, 심사자 등)에 요구되는 출판윤리 준수의 단계별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함

1장 서론

이 책의 발간 목적과 체육·예술 분야
학회의 학문적 특성 및 학술 논문 출판의
5단계를 소개

3장 학술 논문 출판윤리 단계별 권고 사항

학술 논문의 투고 전 단계에서부터 출판
후 단계까지 시계열적으로 학회의 주요
주체들이 준수해야 할 출판윤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요약 제시

5장 출판윤리 규정 작성 권고 사항

학회에서 출판윤리 규정을 작성할 때
유념할 포인트를 제시하고 출판윤리
규정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각 학회의
규정 제정을 지원

출판윤리 관련 주요 이슈 2장

출판윤리에서 강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출판윤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

출판윤리 사례별 권고 사항 4장

출판윤리 문제 발생 시 학회의 대응
방법과 권고 사항을 요약 제시

부 록

출판윤리 관련 참고 자료 및
관련 웹 사이트 소개



02

출판윤리 관련 주요 이슈

-
1. 출판윤리 규정의 중요성
 2. 출판윤리 관련 주요 주체의 역할 및 의무
 3. 출판윤리 검증과 조치의 명확성 강화
 4. 출판윤리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출판윤리 부정행위 예방 노력

1

출판윤리 규정의 중요성

- 01 출판윤리 규정은 해당 학회의 윤리적 학술 출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출판윤리 규정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를 평가하면 출판윤리 제 문제에 대한 학회의 인식 정도와 대응 역량을 예측 가능함
- 02 출판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준수를 강조하는 활동은 연구부정행위를 학회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03 출판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출판윤리 규정은 학회의 출판윤리와 관련된 주요 주체들에 대해 대응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됨
- 04 현재 체육·예술 분야 학회의 경우 투고 규정(또는 지침)과 연구윤리 규정 내에 출판윤리 관련 규정들이 일부 포함 또는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래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05 출판윤리에 대한 국제 규정들은 다양한 학회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여러 학회의 편집위원회들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해외의 많은 체육·예술 분야 학회에서는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음

[권고 사항]

- 1. 독자적인 출판윤리 규정을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과는 별개로 제정하거나, 연구윤리 규정에 포함할 경우 별도의 절이나 장으로 구성하여 출판윤리의 전 범위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2. 출판윤리 규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국내외 다수의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대표적 출판윤리 위원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집)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집)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유럽스포츠킨경영학회(EASM) | 출판윤리 규정에 COPE Guideline 준용 명시

EASM의 학회지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에 논문을 투고를 하려는 저자는 EASM과 협약을 맺은 Taylor & Francis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회지 통합 출판윤리 규정을 따름. 그리고 Taylor & Francis는 이 통합 규정을 COPE 가이드라인에서 준용함

한국운동생리학회 | 출판윤리 국제규범(COPE) 인용한 사례

제17조(COPE 인용)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management, Peer review processes, Post-publication discussion 등의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하고 있는 COPE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함 (<https://publicationethics.org/>) (2019.11.8. 개정)

2

출판윤리 관련 주요 주체의 역할 및 의무

01 출판윤리 관련 주요 주체는 편집인, 저자, 심사자임. 세 주체의 역할과 의무는 학회 출판윤리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주요 주체	역할	의무
편집인	투고 논문의 출판과 출판 후 모든 과정 관리	출판 과정과 출판물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저자	연구 과정과 투고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적 기여	투고 논문에 대한 학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심사자	투고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 판단	학회 심사 규정에 제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심사

02 편집인은 학술 출판 전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함

심사기준 공지	규정준수 확인	표절검사 확인
이해상충 확인	윤리승인 확인	동료심사자 배정
특정심사자 배정	특정심사자 제척	편집인 기밀 유지
심사자 기밀 유지	심사결과 조정	심사결과 통보
이익제기 처리	연구부정행위 대응	독자서비스 대응

03 체육·예술 분야 학회의 규정에는 편집인의 역할과 책무 관련 조항이 비교적 상세하지 못하거나 선별적 항목만 제시된 것으로 조사됨

[권고 사항]

윤리적인 학술 출판을 위하여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출판윤리 규정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13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2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두 심사위원 간에 두 등급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5조(논문 저자와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편집위원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04 **저자**는 학술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부터 출판 후까지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학회 편집인과 심사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함

투고규정 확인	연구부정행위 확인	저자자격 확인
저자순서 동의	중복투고 여부 확인	관련법령 준수 확인
이해상충 표기	사사표기	심사자 요구 대응
심사자 의견 원고수정	이의신청	독자서비스 대응

〈출판윤리의 저자 관련 3대 핵심 내용〉

- 데이터나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문제
- 저자의 자격(저자권, authorship) 문제
 - 명예저자, 유명저자, 선물저자 지양
- 중복출판 문제

- 연구윤리, 왜 필요한가?(이인재, 2012) 중에서 요약 -

05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공저자들이 모두 동의하여야 함. 학회에 따라 저자 순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음

[권고 사항]

저자의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목적으로 저자가 투고 전, 투고 시, 투고 후 확인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출판윤리 의무 규정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함

제1절 투고자(저자) 윤리 규정

제1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서약에 서명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 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출판 업적)

- ① 투고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투고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투고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는다.

(생략)

06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 내용의 수정 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함

심사기준 확인	심사전문성 확인	이해상충 확인 조치
기밀 유지	심사타당성	연구윤리 검증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작성	

07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자는 저자(들)와의 지인 관계와 같은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편집인에게 알리고 심사를 중단하여야 함. 심사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소규모 학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

[권고 사항]

심사자의 출판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고 전, 투고 시, 투고 후의 시점에서 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출판윤리 의무 규정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함

제9조(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위원 작성)

-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 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 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 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생략)

3 출판윤리 검증과 조치의 명확성 강화

01 출판윤리의 검증과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이 학회의 출판윤리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야 함. [예시1]과 같이 조치 내용이 없이 일반적 표현으로 제시된 규정보다는 [예시2]와 같이 정의와 조치 내용이 함께 제시되면 명확성이 강화됨

[예시1]

(표절) 타인의 연구 성과, 아이디어, 데이터,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시2]

(표절) 타인의 연구 성과, 아이디어, 데이터,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학회의 엄중한 경고와 게재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저자와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일정 기간 투고 제한 조치를 받는다. 투고 제한 기간 제재는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02 체육·예술 분야 출판윤리 규정의 명확성의 차이가 학회 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미캔서스주 체육학회(KAHPERD) | The KAHPERD Journal 표절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제시

표절에 대한 제재

투고된 논문에 표절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 저자는 KAHPERD로부터 공식적인 견책을 받습니다. (2) 견책의 사본이 저자의 소속 기관 또는 직장으로 발송됩니다. (3) 저자는 위반 후 2년 동안 저널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18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제20조(제척·기피 및 회피)
- 제21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제23조(판정)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각 조의 항 내용은 지면 제한으로 생략)

- 01 학회는 건전한 출판윤리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함
- 02 저자가 속한 연구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 간에는 연구자(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의뢰, 조치 결과의 공유, 통보 등을 긴밀히 할 수 있어야 함
- 03 학회 간 협력을 통하여 출판윤리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 편집인들이 공동으로 출판윤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COPE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된 출판윤리 규정의 적용을 통해 표준화, 전문성, 구체성 등이 더욱 강화될 것임

2019년에 발행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3판)은 학술 의학 논문을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출판하기 위하여 의학계가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한 노력의 결과임. 가이드라인은 <연구윤리>, <출판윤리> <저작권과 자료 공유>, <기타 윤리>,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음

출판윤리 관련 국내 최신 정보 열람 및 문의 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www.cre.or.kr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www.kure.or.kr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ww.kamje.or.kr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ww.kcse.org

01 학회는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실제로 수행해야 함.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학회원, 편집인, 심사자, 연구윤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윤리 교육은 전형적인 방법임

02 학문 후속 세대에 해당하는 연구 입문자들을 위한 출판윤리 교육과 워크숍 등은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큼. 연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윤리 예방 교육과 차별화된 학회 차원의 출판윤리 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필요함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 연구윤리 교육 참여 권고를 제시한 사례

제9조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연구 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이 지침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03

학술 논문 출판 단계별 권고사항

-
1. 투고 전(前) 단계
 2. 투고 단계
 3. 심사 단계
 4. 출판 단계
 5. 출판 후 단계

1 투고 전(前) 단계

01 학술 논문 출판을 위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투고 전(前) 단계」는 저자에 의해 원고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됨. 학회는 투고 전(前) 저자의 점검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제시하여 저자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02 최종 점검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투고 규정, 연구부정행위, 저자 자격, 중복 투고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이해상충 및 사사표기임

투고 전(前) 단계 저자 점검 사항

점검 사항	내용
투고 규정 확인	해당 학회의 저자 자격 지침과 원고 투고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였는가?
연구부정행위 확인	투고할 원고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자 자격 확인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수와 순서를 결정하였는가?
	학회 규정에 맞게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정하고, 그 역할에 합의하였는가?
	모든 저자가 저자 순서에 합의하였는가?
	모든 저자는 자신의 소속을 바르게 표기하였는가?
중복 투고 여부 확인	투고할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관련 법령 준수 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 승인을 획득하였는가?
이해상충/사사표기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을 성실하게 밝혔는가?

주) 본 표의 내용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03 논문 투고가 진행되면 연구 성과물이 학술지의 편집인과 심사자에게 공개됨. 이때 출판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게재 불가뿐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따르므로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전 학술지의 투고 관련 규정과 저자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함

미국 음악교육협회(MAME) Music Educators Journal | 투고 전 저자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저자

투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고 논문이 독창적이고 본인이 작성
- 투고 논문이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으며 본 저널에만 제출
- 자료가 다른 출처(자신의 출판된 저작물 포함)에서 가져온 경우 출처가 명확하게 인용되고 적절한 허가를 취득
- 투고 논문이 개인 인격권 및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 데이터는 사실이며 조작되지 않음
- 자신의 데이터거나 자신의 문서에 복제된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 여부
- 이해상충 관계가 논문 제출 시 명확하게 명시(연구비 지원 포함)
- 인간 또는 동물 연구에서 관련된 분야의 모든 연구윤리 규정 준수
- 편집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원고를 출판 전, 출판 후이든 발견 시 중요한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
- 모든 저자가 실제 참여하고, 모든 저자가 출판에 동의했는지 여부

(생략)

2

투고 단계

- 01 학술 논문 출판을 위한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인 「투고 단계」는 편집인에 의해 논문에 대한 기초 점검 및 심사 준비가 진행됨
- 02 논문 심사에 앞서 기초 점검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규정 준수, 표절 검사, 이해상충, 윤리 승인 여부 확인임. 심사 준비 사항은 심사 기준 공지, 동료 심사자 배정, 특정 심사자 배제 등임

투고 단계 편집인 점검 사항

점검 사항	내용
규정 준수 확인	투고된 원고가 학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표절 검사	투고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이해상충 확인	투고된 원고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윤리 승인 확인	투고된 원고에 필요한 연구윤리 심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였는가?
심사 기준 공지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을 공지하고 심사자에게 알렸는가?
동료 심사자 배정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 동료 심사자를 배정하였는가?
특정 심사자 배제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의 특정 심사자 배제 신청을 확인하였는가?

주) 본 표의 내용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03 투고 단계는 단순히 논문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심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한 심사 준비를 위한 중요한 단계임. 이때 편집인은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기준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함

- 01 학술 논문 출판을 위한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인 「심사 단계」는 편집인, 심사자, 저자에 의해 종합적인 검증이 진행됨
- 02 출판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편집인의 경우 기밀 유지, 심사자 기밀 유지, 심사자 이해상충 확인임. 심사자의 경우 심사 기준과 전문성 확인이며 심사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확인 및 조치, 전문성 확인, 기밀 유지, 심사 타당성, 연구윤리임. 저자의 경우는 편집인 또는 심사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함
- 03 심사 단계는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편집인, 심사자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자기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논문의 아이디어와 자료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논문 출판은 연구자의 연구 역량 평가 지표이므로 저자는 원고 내용 및 투고 과정에 대한 답변 요구 시 성실하게 응대해야 하며, 편집인과 심사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함. 심사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심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학회의 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을 위해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함

심사 단계 편집인, 심사자, 저자 점검 사항

구분	점검 사항	내용
편집인	편집인 기밀 유지	원고 내용, 게재 가능성, 심사자 등 심사와 관련한 기밀을 유지하였는가?
	심사자 기밀 유지	동료 심사자가 심사 관련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심사자 이해상충 확인	심사자가 심사 과정 중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새로운 심사자를 배정하였는가?
심사자	심사 수락 전	
	심사 기준 확인	학회의 규정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전문성 확인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이해상충 확인	저자 또는 논문의 내용이 자신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이해상충 조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장에게 알리고 심사를 중단하였는가?
	심사 과정	
	전문성 확인	자신의 전문성이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자	요구 대응	
	기밀 유지	심사 과정 중 원고 내용, 게재 가능성 등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였는가?
	심사 타당성	심사 기준에 맞게 원고를 심사하였는가?
	연구윤리	원고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였는가?
	요구 대응	편집인 또는 심사자로부터 원고 내용 또는 투고 관련 절차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는가?

주) 본 표의 내용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4

출판 단계

- 01 학술 논문 출판을 위한 과정 중 네 번째 단계인 「출판 단계」는 편집인, 심사자, 저자에 의해 최종적인 점검이 진행됨
- 02 최종 점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편집인의 경우 심사 결과 조정 및 통보, 이의제기 처리이며 심사자의 경우 저자와 편집인에게 심사평을 작성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함. 저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 수정과 이의 제기를 진행함

출판 단계 편집인, 심사자, 저자 점검 사항

구분	점검사항	내용
편집인	심사 결과 조정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자 간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추가 심사자를 선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부여하였는가?
	심사 결과 통보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적절히 통보하였는가?
	이의 제기 처리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심사자	심사 결과 통보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를 판단하고 이를 편집인에게 통보하였는가?
	심사 결과 작성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사평을 작성하였는가?
저자	원고 수정	편집인 또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를 성실히 수정하였는가?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주) 본 표의 내용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03 출판 단계는 심사 결과의 처리 과정으로서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는 중요한 단계임. 이때 저자와 심사자 간 의견 교환과 최종 판단이 편집인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종료 또는 출판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함

5

출판 후 단계

- 01 학술 논문 출판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출판 후 단계」는 논문 공개 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편집인, 심사자, 저자의 대응이 진행됨
- 02 투고 전, 투고, 심사, 출판의 단계를 통해 공개된 논문은 독자에 의해 질문, 비평,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이 수반될 수 있으며 편집인, 심사자, 저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함

논문 출판 후 단계 편집인, 심사자, 저자 점검 사항

구분	점검 사항	내용
편집인	연구부정행위 대응	논문에 대해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독자통신 대응	독자통신 타당성을 판단하고 저자로 하여금 적절히 대응하게 하였는가?
심사자	독자통신	논문 출판 후, 독자의 질문, 비평, 의견 등에 성실히 답변하였는가?
저자	독자통신	논문 출판 후, 독자의 질문, 비평, 의견 등에 성실히 답변하였는가?

주) 본 표의 내용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03 출판 후 단계는 공개된 논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 제보가 있을 수 있음. 문제 제보 시 편집인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정정 기사 또는 논문 철회에 관한 내용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함. 익명 제보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제보, 개인적 또는 감정적 제보에 대해 학회 차원의 합리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함

04

출판윤리 사례별 권고 사항

-
1. 저자됨의 변경 관련 대응 권고
 2. 표절 관련 대응 권고
 3. 중복 게재 관련 대응 권고
 4. 자료 변조 관련 대응 권고
 5. 이해상충 관련 대응 권고
 6.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 관련 대응 권고
 7. 출판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제보자 관련 대응 권고
 8. 심사자의 부정행위 관련 대응 권고

주) 본 장의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9년 발간한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번역서)의 내용을 국내 출판윤리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요약한 것임

1 저작자의 변경 관련 대응 권고

01 저작자(authorship)의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네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출판 전 저자 추가를 요청한 경우
- 출판 전 저자 삭제를 요청한 경우
- 출판 후 저자 추가를 요청한 경우
- 출판 후 저자 삭제를 요청한 경우

02 저작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모든 저자들이 요청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확인이 된 경우 출판 전일 경우는 심사를 진행하 고, 출판 후인 경우 정정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

03 모든 저자들이 요청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출판 전일 경우 심사를 보류 하고 공저자 간 논의를 하도록 안내함. 출판 후인 경우에는 저자들 소속 기관들이 중재하도록 학회에서 문의하고 기관들이 요청할 경우 정정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저작자에 대한 모든 저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저작자 변경이 교신저자의 요청과 학회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학회 규정에 저작자 변경을 명시하는 것을 권고함

2장 연구자의 윤리

제4조 (저자 표시) [개정 2019.12.12.]

1. 저자는 다음 네 개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연구 아이디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편집 수정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2. 공동저자의 순서는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그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순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동저자의 순서와 표시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을 저자로 명기한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4.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논문 심사 후 수정까지 전담해야 한다. 편집국과의 일차적인 소통의 책임이 있으며 편집국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을 때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논문의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5.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작성한다. 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6. 연구나 출판에 공헌이 낮은 사람들은 기여자(Contributor) 혹은 사사표기(Acknowledge)로 처리하며, 기여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표절 관련 대응 권고

01 표절과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투고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02 표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표절 수준'을 확인하는 것임. 표절 수준은 네 가지 범주(지적 절도, 지적 태만, 과학적 언어를 위한 표절, 기술적 표절)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범주	정의	대처: 투고된 논문	대처: 게재된 논문
지적 절도 (Intellectual theft)	인용 없이 대량의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복제	논문 거절 저자 소속 기관에 알림 제재 부여(투고 금지)	저자 소속 기관에 알림 논문 철회 제재 부여(투고 금지)
지적 태만 (Intellectual sloth)	명확한 인용 없이 '일반적' 텍스트를 복제(예, 표준화된 방법에 대한 설명)	논문 거절 혹은 표절된 텍스트 재작성을 저자들에게 지시	논문 철회
과학적 언어를 위한 표절 (Plagiarism for scientific English)	대개 여러 출처에서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복제	텍스트 재작성을 저자들에게 지시	논문 철회
기술적 표절 (Technical plagiarism)	출처를 밝혔으나 직접 인용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	원문에 대한 적절한 출처 표시/직접 인용 표를 추가할 것을 저자들에게 지시	논문 철회

- 주) 1. 학술지 편집인인 Steven Shafer가 제안한 표절의 네 가지 범주임
 2. 한국연구재단(2019)에서 발행된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194쪽)에서 재인용함
 3. COPE Council. COPE Discussion Document: How should editors respond to plagiarism? April 2011.

03 투고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백한 표절(지적 절도)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편집인이 저자에게 재작성을 지시하고 논문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적 절도에 해당하는 수준의 표절은 투고 논문을 거절하고 저자의 소속 기관에 알리며 학회에서는 투고 금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04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학회는 게재된 논문을 철회해야 함. 이때 지적 절도에 해당하는 명백한 표절일 때 저자 소속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회 차원의 투고 금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게재된 논문의 표절 수준이 지적 태만, 과학적 언어를 위한 표절, 기술적 표절에 해당할 때에도 논문 철회를 조치하여야 함. 저자 소속 기관 통보 등의 조치는 각 학회의 표절에 대한 정의와 해당 학술지의 규정 절차에 따름

05 표절 행위 판단과 조치 수준 결정을 위하여 학회는 표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절 행태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현재 체육·예술 분야의 많은 학회는 교육부훈령 제263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절의 정의(아래 표)를 원문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교육부훈령의 조항을 기본으로 하되 학술지 특성에 따른 표절 행태를 분석하여 표절 규정을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표절 행위의 범위는 넓으므로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제시된 표절의 정의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권고 사항]

표절에 대한 교육부훈령을 토대로 체육·예술 분야 각 학회에서 발생하는 표절 행태에 적합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11조(인용 및 참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도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알려야 한다.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 마. 말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 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01 중복 게재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출판 전에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경우
- 출판 후에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경우

02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원고의 중복 수준'을 점검하는 것임. 경미한 중복인 경우 출판 전에는 이차 논문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추가 인용 요청 또는 중복되는 자료 제거 후 심사를 진행하고, 출판 후에는 정정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

03 중대한 중복인 경우 책임저자에게 중복 출판 증거 자료를 보내고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함. 고의 또는 해명 여부와 관계없이 출판 전에는 게재 불가, 출판 후에는 게재 취소할 수 있음. 불충분한 해명 또는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저자의 소속 기관에 중복 게재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경미한 중복 예시] 일부에서 경미한 중복(분절 출판)이 있거나 혹은 타당한 중복(연구 방법)이거나 재분석하는 경우

[중대한 중복 예시]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매우 유사한 혹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저자들이 이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는 경우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중복 게재 검증 및 대응 규정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복 출판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원고 제출 시 중복 출판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에 저자가 서명하는 절차를 갖출 것을 권고함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4.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1)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 이전에 작성한 소논문을 석·박사학위 논문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자기표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본인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인용을 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여 인용해야 한다.
- 3) 석·박사학위 논문, 혹은 연장선상에서의 연구 논문을 추후 학회지의 소논문으로 투고할 경우에는 학위 논문의 요약본, 혹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제재

제7조(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 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기존 논문에서 10% 이상의 내용을 새로운 연구 결과에 포함할 수 없다.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4 자료 변조 관련 대응 권고

01 자료 변조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출판 전에 자료 변조로 의심되는 경우
- 출판 후에 자료 변조로 의심되는 경우

02 자료 변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의심의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임. 자료 변조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도 저자에게 우려됨을 알림

03 자료 변조 우려에 대해 저자의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을 경우 저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불충분한 해명 혹은 잘못을 인정한 경우 게재 불가 또는 게재 철회할 수 있음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자료 변조 검증 및 대응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음. 규정에 자료 변조의 정의와 문제 처리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권고함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모든 연구 과정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임의 변조나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인지와 제보)

1. 본 학회의 투고 논문을 심사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인지한 심사위원은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당 연구 논문의 다른 심사자 2인에게 통보하고, 이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투고자의 소속과 신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없는 내용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2. 제13조 1항에서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3. 본 학회 학술지 발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회원은 학회나 편집위원회에 제보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이외에도 본 학회 학술 활동 전반에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학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 이해상충 관련 대응 권고

01 이해상충과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출판 전에 이해상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 출판 후에 이해상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02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 기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출판 전인 경우 이해상충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출판 후일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정정 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

03 저자가 이해상충에 대해 부인할 경우 학술지의 정책 및 이해상충 정의를 설명하고 모든 저자에게 이해관계 양식에 서명을 받음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이해상충 관련 규정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학술지 투고 규정에 명확한 이해상충 정의 내용과 투고 전에 이해상충 양식을 통해 저자 확인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이해상충

저자나 저자의 소속 기관이 재정적 관계 아니면 저자의 연구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는 학문적, 개인적, 정치적 관계; 고용관계; 상담 또는 명예, 재정적 연결(예를 들어, 주식과 펀딩 소유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고 느낄 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밝히는 것이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어떠한 사실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식품과학회(FSB)는 독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이해관계 진술은 각 이름별로 밝혀야 한다.

- 김은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음을 선언한다.
- 이는 음식회사 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 박은 약학회사 B로부터 연설자 상을 받았고, 음식회사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 만약 여러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고 선언하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김, 이, 박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 만약 모든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저자들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6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 관련 대응 권고

01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상황은 두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음

-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해명이 된 경우
-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

02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제기된 윤리 문제에 대한 해명' 여부임. 저자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한 경우 저자에게 사과하고 심사를 계속 진행함

[충분한 해명 예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서류 또는 연구 대상의 동의서 사본 등의 제시와 함께 저자의 충실한 해명서를 제출

03 저자의 해명이 불충분한 경우 해명이 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고 저자의 소속 기관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통보할 수 있음. 장기간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검증 및 대응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원고 제출 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을 권고함

제8조(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1.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여성체육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 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5.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2)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3)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 4) 한국여성체육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 5) 한국연구재단에 연구 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6.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향 외에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Ⅲ. 연구윤리 지침 서약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협약서 동의를 의무화한다.

1. 「국기원 태권도연구」의 논문투고 시에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이라는 다음과 같은 협약서 동의 절차 없이는 투고가 불가하다.

저작권 이양 동의/연구윤리 규정 협약서
<p>상기 논문을 국기원 태권도연구(학술지)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표 저자의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들)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기원 태권도연구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국기원 태권도연구(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등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들) 또한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01 출판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제보자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제보자가 학술지에 직접 문제 제기한 경우
- 제보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문제 제기한 경우

02 출판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제보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문제 제보 경로’에 따른 대응 방법임. 학술지에 직접 문제 제기한 경우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에 문제 제기한 경우 구체적 사안은 노출하지 않도록 함

03 제보자가 명백한 근거를 제공할 경우 조사가 진행되나, 모호한 주장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답변이 어려울 것임을 밝힘. 제보자의 태도가 공격적이거나 개인적인 내용일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제보자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출판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제9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 보전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조(부정행위 접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에 의해 실명으로 제보된 부정행위, 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인 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즉시 부정행위에 관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01 심사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은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저자가 부정행위를 한 심사자를 특정한 경우
- 저자가 부정행위를 한 심사자를 오인한 경우

02 심사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저자에 의한 실제 잘못된 심사자의 특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저자가 부정행위를 한 심사자를 특정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결과가 인정되면 심사자의 심사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음

03 저자가 부정행위를 한 심사자를 오인한 경우(익명 심사 제도*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편집인은 저자에 의해 오인된 심사자와 실제 심사자 사이의 관계를 점검(동일 학과 또는 사적 관계 등)해야 함. 실제 심사자에게 직접 심사를 했는지 또는 타인과 논의했는지를 확인 후 저자에게 상황 설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때 심사자의 이름 공개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공개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심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익명 심사 제도: 저자에게 심사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권고 사항]

체육·예술 분야 학회 중에는 심사자의 부정행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저자의 아이디어 또는 자료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술지 투고 규정에 심사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권고함

제21조(논문내용의 보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논의해서도 안 된다. 또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출판되지 않은 투고 논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05

출판윤리 규정 작성 권고 사항

-
1. 출판윤리 규정 작성 지침
 2. 『〇〇학회의 출판윤리 규정』 예시

1

출판윤리 규정 작성 지침

- 명칭** 규정의 명칭을 『출판윤리 규정』으로 사용함을 권고함. 이 명칭은 출판과 관계된 연구윤리 내용과 논문 출판과 관계된 출판윤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학회 규정의 명칭으로 타당성이 높음. 국제 규범과 국내 의학 분야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범위** 규정에 포함될 내용 범위는 출판윤리의 주요 항목 모든 영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규정의 내용은 학회의 출판윤리 관련 제반 문제를 처리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임
- 지양** 규정에는 출판윤리와 관련성이 낮은 위원 선임 절차, 투고 지침, 연구윤리의 일반적 정의 등은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학술 논문 출판의 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투고자에게 필요한 투고 지침 등은 출판윤리 규정과 별도로 제정하여 공고할 것을 권고함
- 준용** 학회의 학문 분야 특성에 따라 강조를 원하는 규정이 구체적이고 매우 방대할 경우 타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이때 준용되는 규정은 국내외 표준으로 손색이 없고, 회원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타 규정을 준용함을 출판윤리 규정에 명시함
- 기술** 규정의 각 항을 기술할 때 동작 동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이는 출판윤리의 주요 주체들이 규정을 보고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할 수 있음

〈활용 안내〉

본 예시 규정은 국내외 출판윤리 최신 방향과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각 학회의 학문적 특성과 투고 논문의 경향 등을 반영하여 본 예시 규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작성하거나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출판윤리 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출판윤리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투고된 논문의 연구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방지 및 비윤리 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출판윤리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학술 발표와 관련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비 회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윤리적 학술 출판과 사회적 책임

제3조(윤리적 학술 출판) 저자, 편집인, 심사자는 논문 출판의 모든 과정에서 출판윤리와 연구윤리의 책임자, 관리자, 수행자로서 윤리적 학술 출판이 이루어지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책임) 저자, 편집인, 심사자는 출판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저자

제5조(저자됨)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수록된 저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 ③ 최종 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저자 이해상충)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가 편집장 및 주요 임원과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편집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저자 순서와 소속)

1.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논문 투고 접수를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하여 모든 저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 기관을 표기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① 연구자와 고용 관계에 있는 기관
 - ②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 기관
 - ③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제8조(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 과정 동안 동료 심사, 출판 과정 동안 편집인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9조(기여자)

1.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acknowledgment)'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10조(저자 권리) 저자는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장 편집인과 심사자

제11조(편집인 권한과 의무)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 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3. 편집인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 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심사자 선정)

1. 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2. 편집인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심사자와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3.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심사자 의무)

1.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심사자는 편집인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5.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14조(비윤리적 심사 행위) 심사자는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심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 종료 후 심사 논문의 사본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4. 심사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하는 행위

제15조(심사자 이해상충)

1. 심사자는 저자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면 즉시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5장 출판윤리 부정행위 조치

제16조(연구부정행위 조치)

1. 저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투고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되는 저자에 대한 경고, 소속 기관 통보,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 의결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학회의 윤리위원회 또는 편집인에 신고해야 한다.
2. 학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나, 학회는 소속 기관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제재)

1. 학회는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이미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이미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엄중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이미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9조(논문 철회)

1.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편집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한다.
 - ①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②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③ 부당한 중복게재나 이중 출판을 밝혀진 경우
 - ④ 사용 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⑤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⑥ IRB, IACUC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 ⑦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 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⑧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인쇄본과 온라인판)에 공지해야 한다.
4. 저자가 심사 중인 투고 논문의 중대한 결점을 발견한 경우 자진 철회를 편집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 예방)

1.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원고에 대한 문장 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학회는 매년 정기 세미나 개최 시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우려 표명)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 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6장 저작재산권과 독자통신

제22조(저작재산권)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은 허락한다.

제23조(독자 서비스)

1. 학회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통신란을 둘 수 있다.
2. 편집인은 독자통신란에 올라온 저자의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한다.
3. 저자는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4. 독자는 연구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선해야 한다.

부 록

출판윤리 관련 참고자료

- 교육부훈령 제263호(2018.7.17. 일부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2019)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제3판)』
한국연구재단(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한국연구재단(2020)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2019)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COPE(2019) 『A COPE Study: Exploring Publication Ethics Issues in the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ley(2020) 『Best Practice Guidelines on Research Integrity and Publishing Ethics』

출판윤리 관련 웹사이트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https://www.kure.or.kr>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https://www.kamje.or.kr>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https://www.kcse.org>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s://www.cre.or.kr>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s://publicationethics.org>
Wiley Publishing ethics guidelines <https://authorservices.wiley.com>



집필 책임자

오수학 인하대 교수

공동 집필자

유정애 중앙대 교수

김지현 조선대 교수

김형숙 한양대 교수

권영문 인하대 강사

최지아 인하대 강사

기획: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편집인

발행/인쇄일자: 2021년 6월 14일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편집/제작: 에코디자인 044-868-0054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042-869-6648

비매품

이 책의 원문파일(PDF)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